

의안 번호	1802	<b>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</b> <b>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1. 8. 20.(금)
- 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8. 20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9. 2.(목)

### 2. 제안설명 요지(안전도시국장 김종화)

#### 가. 제안이유

-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산중구지구협의회에서 수행하고 인도주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(안 제3조)
  -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
  -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
  -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
  -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
  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  -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
- 자원봉사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#### 다. 근거법규

-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 제8조 및 제22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경희)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산광역시중구지구협의회가 인도주의적 실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로써  
상위법령 등 검토한 바 조례제정 가능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※ 조례 제정 현황 (2021. 8. 31. 기준)

- 울 산 3개 시구군 (울산광역시, 남구, 동구 제정)
- 전 국 총 172개 시·군·구 제정

# 근거법규

## 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」

제8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)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,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29.>

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5. 12. 29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2. 29.>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29.>

제22조(사업 재원의 조성)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 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